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6. 10. 26.>

지정번호: 제 호

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서

지정 구분		유효기간	~
사업장 명칭		법인등록번호	
사업자 성명		참여농가 수	
사업장 소재지			
주요 품목		사업장 규모	
지정 부가조건			

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

210mm×297mm[백상지 150g/㎡]